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가단4791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변론 종결 2016. 10. 13.

판결 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를 인도하고,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에 관하여 2010.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소유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망 E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에 관하여 2008. 11.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라. 망 E는 2010. 6. 31. 사망하였다.

마. 피고들은 망 E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재산상속인이다.

바.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 4. 접수 제517호로 2010. 6.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쳐졌다.

사.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를 취득한 2010. 12. 2.부터 2016. 8. 2.까지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68,000,000원(= 68개월 × 1,000,000원), 2016. 8.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1.의 가. 내지 마.항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0. 7.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느단226 사건으로 망 E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 E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비롯한 아무런 권리도 취득한 바가 없다.

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 4. 접수 제517호로 2010. 6.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의 근저당권자인F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대위하여
마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상속등기에 의하여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을
상속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결국 피고들이 망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을 상속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

별지

부동산목록

1. 강원 원주시 G 공장용지 3040㎡
2. 강원 원주시 G 대승기공 공장 다동
일반철골구조 철골트러스 및 티에이치케이125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380.8㎡
2층 108.8㎡
3. 강원 원주시 G 대승기공 공장 라동
일반철골구조 철골트러스 및 티에이치케이125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322.5㎡
2층 113.25㎡. 끝.